

##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 회계연도  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-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 | 0 건)   | 0 원                 |
| 2. 예산전용( | 17 건)  | 3,343,867,000 원     |
| 3. 예산이체( | 473 건) | 472,471,174,380 원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